# 2025년『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』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

소상공인의 신속·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「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」사업이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수정 공고를 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9일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## 1 사업개요

□ **(사 업 명)**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

□ **(사업목적)**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**실패부담을 최소화**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**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**

□ **(지원대상)** 폐업(예정) 소상공인

□ **(신청기간)** '25년 1월 ~ 예산 소진 시

□ **(지원규모)** 54,863건 내외 / 175,651백만원

* 점포철거비 지원 추경예산(10,613건, 42,452백만원) 포함

□ **(지원내용)**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, 점포철거, 법률·채무조정 지원

<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>

| 신청·접수 | | 요건확인 | | 분야별 폐업지원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사업정리컨설팅 | 점포철거 | 법률자문 | 채무조정 신청 |
| 온라인으로 (hope.sbiz.or.kr) 일괄 신청접수 | ➡ | 신청요건 일괄확인 | ➡ | 재기전략<br>세무<br>부동산<br>심리상담<br>직무·직능 | 현장확인<br>점포철거<br>증빙검토 | 법률자문<br>법률상담<br>계약서검토 | 공적채무조정<br>사적채무조정 |
| 소상공인 | | 공단 | | 컨설턴트 | 전문업체 | 법무법인 | 법무법인 |

# 2 세부 내용

## 1 사업정리 컨설팅

□ **신청자격** 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**❶ 폐업(예정) 소상공인:**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[별첨1] 참고)으로 공고일 기준 (기 폐업) 또는 (폐업예정) 소상공인
- (기 폐업) 폐업일이 '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

**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**
- (기 폐업)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 / (폐업예정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 신청일

**❸ 업종제한:** [별첨2]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□ **지원규모** : 총 12,000건 내외

□ **지원내용** 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
○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 중, 최대 3개 분야 신청·지원

※ 폐업(예정)자의 유사 업종(또는 취업자)*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
* (예) 부동산 중개업 폐업(예정)자 →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
* (예) 신청일 기준 취업자 → 직무·직능 컨설팅 지원불가

| 자격요건 | 분야 | 세부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폐업 예정 | 재기전략 | •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|
| | 세무 | •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<br>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 |
| | 부동산 | •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<br>•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 |
| 기폐업 | 세무 | 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 |
| 공통 | 심리 | •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|
| | 직무·직능 | •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<br>•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 |

□ **제출서류**

**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**

▶ 신청 시, 홈페이지에 직접입력(❶,❷),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(❸,❹)

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❷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
❸ 소상공인/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
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별도 첨부
❹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

□ **지원절차**

| ① 지원사업신청 | ② 신청서류검토 | ③ 사전진단 | ④ 컨설턴트선정 | ⑤ 컨설팅수행 | ⑥ 컨설팅 점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재기플래너 (검증담당) | 공단(센터) | 신청인 | 컨설턴트 | 공단(센터) |

## 2 점포철거비 지원

□ **지원규모** : 40,613건 내외(기존30,000건 + 추경10,613건)

□ **지원내용**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

○ 전용면적(3.3m²)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(부가세 지원제외)

* ①지원금은 **위 기준 내에서**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**(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)**
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**(자력철거 시 지원불가)**

□ **신청자격** : 사업공고일 기준,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**❶ 폐업(예정) 소상공인:**『소상공인기본법』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[별첨1] 참고)으로 공고일 기준 (기 폐업) 또는 (폐업예정) 소상공인
- (기 폐업) 폐업일이 '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
- (폐업예정)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

**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**
- (기 폐업)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 / (폐업예정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 신청일

**❸ 임차계약(유상임차)**
- **유상임대차계약**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**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**

**❹ 업종제한:** [별첨2]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□ **참여제한** :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, 지원 제외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|---|
|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| •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<br>•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|
| ② 기 수혜자 | •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<br>*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,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|
| ③ 주거용도 건축물 | •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'주택', '아파트' 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인 경우<br>(단,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)<br>*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|
| ④ 유사사업 수혜자 | 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<br>* 추후 **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**할 수 있음 |
| ⑤ 사업장 이전 | • 폐업이 아닌,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<br>•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<br>*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: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|
| ⑥ 제외업종 | 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<br>•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([별첨2] 참조)<br>-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*, **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**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<br>*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최근1년) 제출필수(국세청 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 |

□ **지원절차**

| ① 지원사업 신청 | ② 신청서류 검토 | ③ 점포 철거 | ④ 정산서류 제출 | ⑤ 정산서류 검토 | ⑥ 비용 지급 | ⑦ 현장 점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상공인 | 공단 (재기플래너) | 소상공인 | 소상공인 | 공단 (재기플래너) | 공단 →소상공인 | 공단 (재기플래너) |

※ 기 철거자의 경우,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통합제출(②+④+⑤) 가능하도록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(6월 중, 홈페이지 별도공지)

## □ 제출서류

**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**

▸ 신청 시, 홈페이지에 직접입력(❶,❷),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(❸,❹)

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❷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
❸ 소상공인/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
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별도 첨부
❹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

**점포철거비 제출서류**

| 구분 | 제출서류 | 제출요령 |
|---|---|---|
| **신청서류** (1차 제출서류) | ① **임대차계약서** 또는 **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** | • 임차인,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, 전용면적 명시<br>• 가맹사업장(프랜차이즈)은 가맹계약서 인정<br>• 임차인은 **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**인 경우만 인정<br>* 단,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(배우자 포함)인 경우 인정(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)<br>**※ 유의사항**<br>‣ **임대인·중개인의 정보 ⇒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**<br>‣ **임차인(신청인)의 정보 ⇒ 성명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** |
| | ② **건축물대장** | • '용도'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,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<br>**[발급처]**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세움터(eais.go.kr)에서 발급가능 |
| | ③ **영업신고증** (필요시) | •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제출 |
| **정산서류** (2차 제출서류) | ① **폐업사실증명원** | **[발급처]**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<br>**※ 유의사항**<br>‣ 종된사업장의 경우, **'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(개별)'**을 통해 폐업(폐쇄)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<br>‣ 구청에서 발급하는 **'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'** 불인정 |
| | ② **공사내역서** | **[발급처]**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<br>* 공급자(철거업체), 공급받는 자(신청인)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. |
| | ③ **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** | **[발급처]**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)<br>**※ 유의사항**<br>‣ 전자세금계산서 내 **승인번호, 공급자·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, 상호, 작성일자, 공급가액, 세액, 품목(내용)** 모두 확인되어야 함<br>‣ **이미 사업장을 폐업**한 경우,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|
| | ④ **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** (이용대금명세서) | • **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→ "이체확인증" 제출**<br>-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(현금거래 불인정)<br>* 포함내용 : 이체금액·일시, 수취인 성명(예금주)·은행명·계좌번호<br>**[발급처]**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(앱) "이체확인증" 캡처분* 인정<br>* 단순 거래내역(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) 캡쳐분 인정불가<br>• **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→ "카드대금 완납확인증" 제출**<br>-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* (또는 이용대금명세서)<br>**[발급처]**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<br>•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(신청인)에게 발행한 **정산내역서** 제출<br>***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** |
| | ⑤ **통장사본** | •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<br>* 단, '압류방지통장(계좌)'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<br>** 부득이한 사유(금융채무 불이행자 등)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울 경우 직계가족(배우자) 계좌로 지급 가능("타인계좌(직계가족) 수급 관련 서식(홈페이지 자료실)" 첨부 |
| | ⑥ **점포철거 전·후 사진** | •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·후 사업장 내·외부 사진<br>*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,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|

## 3 폐업 법률자문

□ **신청자격** 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❶ **폐업(예정) 소상공인:**『소상공인기본법』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[별첨1] 참고)으로 공고일 기준 (기 폐업) 또는 (폐업예정) 소상공인
- (기 폐업) 폐업일이 '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

❷ **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**
- (기 폐업)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 / (폐업예정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 신청일

❸ **업종제한:** [별첨2]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□ **지원규모** : 1,500건 내외

□ **지원내용** 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
○ **(지원방법)**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: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

○ **(지원범위)** 법률 자문,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,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

○ **(지원절차)**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

□ **제출서류**

**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**

▸ 신청 시, 홈페이지에 직접입력(❶,❷),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(❸,❹)
-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-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
- ❸ 소상공인/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
 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별도 첨부
-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

□ **지원절차**

| ① 지원사업 신청 | ▶ | ② 신청서류 검토 | ▶ | ③ 변호사 배정 | ▶ | ④ 법률자문 수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| 재기플래너 (검증담당) | | 법무법인 | | 법무법인→ 신청인 |

## 4 채무조정 신청지원

□ **신청자격** 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**❶ 폐업(예정) 소상공인:**『소상공인기본법』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[별첨1] 참고)으로 공고일 기준 (기 폐업) 또는 (폐업예정) 소상공인 (단,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)
- (기 폐업) 폐업일 무관

**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**
- (기 폐업)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 / (폐업예정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 신청일

**❸ 업종제한:** [별첨2]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※ 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
(단,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)

□ **지원규모** : 750건 내외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·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**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** 제공 및 **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**

○ **(공적채무조정)**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·회생 지원(변호사 수임료,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)

| | |
|---|---|
| **① 개인파산** |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,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|
| **② 개인회생** |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(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)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|

○ **(사적채무조정)** 단기·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(이자율, 원금 조정 등)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

| | |
|---|---|
| **① 신속채무조정** |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(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, 상환기간 연장 등)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|
| **② 사전채무조정** | 1~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(이자율 인하, 상환기간 연장 등)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|
| **③ 채무조정 (개인워크아웃)** |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(채무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)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|

## □ 제출서류

|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| |
|---|---|
| ▸ 신청 시, 홈페이지에 직접입력(❶,❷),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(❸,❹)<br>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<br>❷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<br>❸ 소상공인/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<br>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별도 첨부<br>❹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 | |
| **채무조정 신청지원(해당자) 제출서류** | |
| ① (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) 주민등록등본<br>*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<br>② (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) 주민등록등본<br>*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| 서울금융복지<br>상담센터<br>(1644-0120) |

## □ 지원절차

| ① 지원사업 신청 | ▶ | ② 신청서류 검토 | ▶ | ③ 변호사 배정 | ▶ | ④ 채무조정 수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| 재기플래너<br>(검증담당) | | 법무법인 | | 법무법인→<br>신청인 |

## 3 신청방법, 신청기간 및 문의처

□ **신청방법** 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ttp://hope.sbiz.or.kr) 신청·접수

○ 4개 분야(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지원, 법률자문, 채무조정)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

**< 신청시 유의사항 >**

▶ 사업정리 컨설팅 : 5개(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심리, 직무·직능)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(단,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)

▶ 점포철거비지원 : 업체를 통하지 않고 **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**

▶ 폐업 법률자문 :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(이혼, 증여 등) 자문은 지원 제외

▶ 채무조정 신청지원 : ❶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,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
❷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,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(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)
❸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(변호사)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

※ **(공통)**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

□ **신청기간 : 25년 1월 ~ 예산 소진시 까지**

| 세부사업 | 신청기간 |
|---|---|
| 사업정리 컨설팅 | '25. 1월 ~ 예산 소진시 |
| 점포철거비 지원 | '25. 1월 ~ 예산 소진시 |
| 폐업 법률자문 | '25. 3월 ~ 예산 소진시 |
| 채무조정 신청지원 | '25. 3월 ~ 예산 소진시 |

□ **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**

# 별첨 1 소상공인 기준(규모,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## ❶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|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| 근로자 기준 |
|---|---|
|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|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|
| 그 밖의 업종 |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|

## ❷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

|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매출액 기준 |
|---|---|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|
| 2. 음료 제조업 | C11 |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
| 15. 가구 제조업 | C32 |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|
| 17. 수도업 | E36 | |
| 18. 농업,임업 및 어업 | A |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|
| 19. 광업 | B | |
| 20. 담배 제조업 | C12 |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| 29. 건설업 | F |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| H |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| G |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|
| 35. 부동산업 | L | |
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N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
| 41. 교육 서비스업 | P |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|

비고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## 별첨 2 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)

| 표준산업분류 | 업 종 |
|---|---|
| 33409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 중 | 담배 중개업 |
| 46209 중 | 잎담배 도매업 |
| 46333 | 담배 도매업<br>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
| 46463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64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11 중 | 약국, 한약국 |
| 47859 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|
| 47993 중 | 다단계 방문판매<br>*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|
| 52991 중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|
| 56211 | 일반유흥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흥주점업 |
| 5821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9 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
| 68 | 부동산업<br>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<br>- 부동산관리업(6821)<br>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<br>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| 7639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|
| 731 | 수의업 |
| 73904 중 | 감정평가업 |
| 75330 중 | 흥신소 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
| 표준산업분류 | 업 종 |
|---|---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6 | 보건업<br>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|
| 91113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9122 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91242 | 카지노 운영업 |
| 91249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
| 9612 중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br>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<br>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<br>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|

※ **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**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**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**
  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**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**
  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.약국(47811 중)

**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**

| 재해피해 소상공인 | 융자허용 업종 |
|---|---|
| **공통**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 |
| **관광특구지역 소재**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 |
| **특별재난지역 소재**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 |